성주특산물전시판매장무상사용허가동의(안)

의 안 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03. 3. .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제안이유

- ㅇ 성주참외의 대내외 브랜드 제고로 인한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건립한 성주특산물전시판매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
- ㅇ 부지 소유주이며 참외전문기관인 성주참외농협에 무상사용허가하여 성주참외의 전시·홍보의 극대화를 기하고
- ㅇ 관리위임에 따른 운영예산절감을 도모하며
- ㅇ 향후 참외명품관으로 확대하여 지속적인 성주참외의 명성을 유지코자 함

2. 주요골자

- ㅇ 지방재정법시행령제88조2항4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재산을 무상사용허가코자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성주특산물전시판매장을 부지 소유주이며 참외전문조합인 성주참외농협에 무상사용허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함
- ㅇ 무상사용허가대상 : 성주읍 성산리 170-21번지 429.4㎡(전시판매장 330, 창고 99.4)

3. 관계법령 및 참고자료

- ㅇ 지방재정법 제 82조1항1호
- ㅇ 지방재정법시행령제85조1항, 제88조1항15호및2항4호
- ㅇ 군정조정위원회 심의결과 : 2003. 3. 13 가결

성주특산물전시판매장무상사용허가동의(안)

지방재정법제82조1항1호및동법시행령제85조1항,동법시행령제88조1항15호및제2항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특산물전시판매장의 사용허가에 대하여

⇒ 성주참외원예농업협동조합에 무상사용허가코자 함

【 관 련 법 령】

□ 지방재정법

○법제82조(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)①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이를 대부·매각·교환·양여·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, 이에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.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

1. 그 용도 및 목적에 장해가 없는 한도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는 경우

□ 지방재정법시행령

- 시행령제85조(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관리)①법제8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·수익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88조의 규정을 - - - 준용한다
- 시행령제88조(잡종재산의 대부)①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할 수 있다.

15. 당해 시·도 시·군 및 자치구를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·전시 또는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대부하는 때

② 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.

4. 제1항 1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